

일자리+ 정부, 기업,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 2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단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방문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7일(목) 화성특례시 동탄일반산업단지에 있는 해솔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운영사 관계자, 자치단체 관계자, 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했다.

동탄산단 해솔어린이집은 화성특례시가 1,000m²의 부지를 제공하고 6개의 대기업과 12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운영에 참여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으로, 2015년 고용노동부가 시설건립비 약 15억원을 지원하여 설립했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대기업·지자체가 부지나 비용을 지원하고, 다른 중소기업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현재 전국에 75개소가 운영 중이다.

일·가정양립 현장 점검 및 격려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상생형 어린이집 지원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첫째, 올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새로 지원하는 긴급돌봄* 인건비와 운영비(13억원) 활용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현장과 공유하기로 했다. 실제 1월 경기도의 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갑자기 고열이 발생한 아동을 격리간호 하고,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오전 6시부터 아동을 보육하는 사례가 있어 긴급돌봄 인건비와 운영비 총 80여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 원아 발병, 담임교사의 계획에 없던 공백, 부모의 돌발 야근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하여 이에 대응 시, ①인건비 1인당 월 최대 138만원, ②운영비 개소당 월 최대 30만원 추가 지원

둘째, 공모를 통하지 않고 2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어린이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상생형으로 승인하여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10억원을 초과하여 설치비를 지원받은 직장어린이집은 7년(2,585일)간 의무적으로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6년으로 단축하여 운영 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주저하는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문수 장관은 간담회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좋은 시설과 교사를 갖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현재 75개인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100개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이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직장어린이집 개선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자체, 기업과도 필요한 협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5년 일·육아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저출생 반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종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육아휴직에 대해서까지 지원범위를 넓혔고,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월 23일부터는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어,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장(연간 3일→6일)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대폭 늘어났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와(만 8세→12세), 사용기간이(최대 2년→3년) 연장되는 등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제도가 확대 된다.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	책임자	과 장	장중서 (044-202-7962)
		담당자	사무관	황소진 (044-202-7976)



붙임1 현장방문 개요

- 일 시 : '25. 2. 27. (목) 10:00~11:30
- 장 소 : 동탄산단 해솔어린이집 (화성시 동탄산단6길 12)
- 참석 대상
 - (고용부) 장관, 통합고용정책국장, 일가정양립추진단과장
 - (어린이집) 운영사(ASML코리아, AP시스템(주), (주)이랜텍, (주)삼진엘앤디) 관계자, 원장, 보육교사, 화성시 영유아보육과장
- 세부 계획(안) ※ 행사 전체 공개

시 간 (90')	주요 내용	비고
10:00~10:40(40')	▶원아들과 인사 및 현장 순회	장관
10:40~11:30(50')	▶간담회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및 지원강화 방안 논의	참석자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육아휴직

	현행	개선
기간 및 사용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
	3번에 나눠 사용 (분할 2회)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개선
기간	10일	20일
정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5일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사용	2번에 나눠 사용 (분할 1회)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개선
대상 및 기간	자녀 연령이 8세 이하	12세 이하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 2
사용	최소 3개월 이상	최소 1개월 이상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개선
사용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가능 *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는 전기간
사용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시 기간	현행	개선
	90일	100일

난임치료 휴가

	현행	개선
기간	연간 3일 (1일 유급)	연간 6일 (2일 유급)
정부지원	정부 지원 없음	중소기업 근로자 2일
비밀유지	해당없음	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